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총괄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하부조직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담당관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재편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간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전략총괄과’ 사무 일부와 ‘전략분석개발과’의 사무를 ‘중소기업정책과’로 통합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 2명(8급 2명)의 직급을 2029년 6월 7일까지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종전 부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던 중소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력 15명(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8일까지에서 2028년 6월 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1.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각각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총괄·조정
2. 주요정책 현안과제의 발굴·조정
3. 주요정책의 미래전략 발굴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5. 중소기업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총괄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7.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
8.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9. 대내외 정책 메시지 관리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및 국회 관련 업무 총괄

제6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재정운용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민원, 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17.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17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18.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9.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20.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각각 “중소기업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를 “중소기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총괄과장”

을 “중소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장기 중소기업”으로, “미래전략 수립·관리 및 총괄·조정”을 “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총괄·조정”을 “총괄”로, “및 연계·통합”을 “및 비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립·시행 및 메시지 관리”를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의제 발굴·개발
14.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1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19.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0.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21.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22.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 분석
23.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기업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5”를 “77”로, 행정서기·세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0”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6월 8일”을 “2028년 6월 8일”로, “2026년 6월 9일”을 “2028년 6월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6월 8일”을 “2028년 6월 8일”로, “2026년 6월 9일”을 “2028년 6월 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은 2029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8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서기·사무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u> ,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u>기획재정담당관</u> ,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u>기획총괄담당관</u> , <u>재정운용담당관</u> ----- ----- ----- <u>기획총괄담당관</u> , <u>재정운용담당관</u> ----- ----- ----- -----.
<u><신 설></u>	⑤ <u>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총괄·조정</u> <u>2. 주요정책 현안과제의 발굴·조정</u> <u>3. 주요정책의 미래전략 발굴</u> <u>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u> <u>5. 중소기업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총괄</u>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5. ~ 9. (생략)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7.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
8.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9. 대내외 정책 메시지 관리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정운용담당관-----

---.

1.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및 국회 관련 업무 총괄
<삭 제>
- <삭 제>
- <삭 제>
2. ~ 6.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삭 제>

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생략)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7.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7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18.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9.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20.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⑨ -----

--.

<삭제>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 합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 의 향상에 관한 사항	<삭 제>
2.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 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삭 제>
3.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삭 제>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18.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 회 운영	<삭 제>
19. 그 외 부내 민원, 정보화, 정 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사항	19. ----- <u>정보화</u> ----- ----- -----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생 략)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현행 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중소기업전략기획 관</u> ·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 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 로 하며, <u>중소기업전략기획관</u> · 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 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	② ----- ----- ----- ----- <u>중소기업정책관</u> ----- ----- ----- <u>중소기업정책관</u> ----- ----- -----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제69호,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⑥ (생략)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중소기업정책관-----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중소기업정책과-----

-----.

⑧ 중소기업정책과장-----
-----.

1. <u>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미래 전략 수립·관리 및 총괄·조정</u> 2. <u>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및 연계·통합</u> 2의2. <u>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u> 2의3. <u>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u> 3. <u>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메시지 관리</u> 3의2.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u>중·장기 중소기업 -- 계획의 수립</u> 2. ----- <u>총괄 및 비전 관리</u> <u><삭제></u> <u><삭제></u> 3. ----- <u>수립·시행</u> 3의2. ~ 11. (현행과 같음) 12. <u>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u> 13. <u>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제발굴·개발</u> 14. <u>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u> 15. <u>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16. <u>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생 략)

⑨ 전략분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제 발굴·개발

3. 중소기업 정책 분야 중장기 전략 개발

4.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의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1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19.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0.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21.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22.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 분석

23. 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전산화에 관한 사항

24.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 제>

<u>연계 및 지원이력 수집·관리</u> <u>에 관한 사항</u> 5. <u>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u> <u>및 조정</u>에 관한 사항 6. <u>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u> <u>성과 점검</u>에 관한 사항 7. <u>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u> <u>시스템의 운영·관리</u> 8. <u>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u> <u>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u> <u>망</u> 9. <u>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u> <u>및 분석</u> 10. <u>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u> <u>관리</u> 11. <u>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u> <u>통계의 개발</u> 12. <u>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자료</u> <u>수집 및 빅데이터 통계 분석</u> 13. <u>중소기업 통계의 정보화·</u> <u>전산화에 관한 사항</u> ⑩ ~ ⑫ (생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② (생략)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⑨ ~ ⑫ (현행 제10항부터 제2 2항까지와 같음)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그 밖에 중소기업부의 정책기획관 및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 ⑥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
되는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
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
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

-----.

1. ~ 21. (현행과 같음)

22. -----
----- 중소기업정책
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
 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
 연구사 1명, 운전서기 1명)은 20
 26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
 26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
 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
 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
 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
 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세
 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
 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
 구사 2명, 행정서기·세무서기
 ·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
 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운
 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

 ----- 20
 28년 6월 8일----- 2028
 년 6월 9일 -----

 -----.

② -----

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u>2026년 6월 8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 6월 9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2의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 --- <u>2028년 6월 8일</u>----- --- <u>2028년 6월 9일</u> ----- ----- ----- -----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통계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공업연구사	· · <u>75</u>	· · <u>77</u>	+2
행정서기 · 세무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2</u>	<u>30</u>	-2
· ·	· ·	· ·	